

예산총칙

2016년도 간주예산 1 차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14,391,682	33,431,750
일반회계	906,891,682	27,206,750
특별회계	207,500,000	6,225,000
공기업특별회계	108,882,330	3,266,47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496,252	1,664,88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673,340	1,580,20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12,738	21,382
기타특별회계	98,617,670	2,958,53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95,414	77,862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658,835	19,765
도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15,202	15,456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413,649	72,409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942,585	28,278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395,661	251,8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1,360,076	40,802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50,000	1,500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2,998,365	389,951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754,758	682,643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546,142	76,384
아산신정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621,834	138,655
아산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769,200	143,076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705,949	81,178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	31,290,000	938,7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491,92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